

SAMC | LAW REVISION

1. 과다·과소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로 해결하세요!

관세청은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받을 수 있는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을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요량 제도에 대한 규정 미숙지 및 과다환급 추징에 대한 부담 등으로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Read More](#)

2. 협정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차이 이렇게 해결하세요!

관세청은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의 협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지침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서는 협정 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 번호가 다를 경우 협정 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HS 번호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지침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우리나라와 협정 상대국의 HS 번호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Read More](#)

3. 10월 1일부터 ‘합법 별채된 목재’만 수입할 수 있어요!

올 10월 1일부터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합법적으로 별채된 목재인지에 대한 서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 벌채가 산림 파괴와 기후 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가운데 최근 APEC에서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불법 벌채 교역 제한을 위한 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은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APTA, 특혜관세 인하 및 세번변경기준 적용 확대

한국무역협회는 7월 5일 'APTA 4라운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APTA와 FTA는 관세양허 방식 및 원산지 증명 등 세부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4라운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회원국은 특혜관세 대상 품목 및 관세인하 폭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추가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기존 대비 양허대상을 확대해 전체 품목의 29%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Read More](#)

2. 中, 식품·화장품 등 1,449개 품목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중국 재정부는 5월 31일 '일반 소비자품 수입 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며, 최혜국에서 수입하는 1,449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대상 상품은 식품, 화장품, 의류, 약품 등 일용소비품이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 제품수출 시 HS 코드별 관세 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ad More](#)

3. 수출 걸림돌 줄어든다 ... 8개국 11건 규제 해소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차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8개국과 기술규제 11건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 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의사항으로 정부는 중국시장 진출에 문제가 되던 사이버 보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식품 등의 규제를 개선·철회하거나 유예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동, 우크라이나, 필리핀과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통관검사 관련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한·중 제2차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북경 상무부에서 제2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열었다고 밝혔다. 우리 측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중국 측 양 쩡웨이 상무부 국제사부장을 대표로 양국 정부 부처 대표단 40여명이 협상에 참석했다. 주요 의제로는 ▲협정문 주요 쟁점 협의, ▲시장개방 협상 방향, ▲향후 협상 일정 논의가 올랐다. 정부는 관광·문화·금융·의료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Read More](#)

2. 한·미 FTA 개정문, 이르면 9월 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올 3월 한·미 FTA 개정의 원칙적 합의 이후 최근 분야별 문안 협의를 사실상 완료했다”며, “영향평가 및 일부 기술적 사항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경제적 영향평가를 마쳐 미국이 의회와 60일간의 협의를 마치면 서명 절차만 남는다. 이에 빠르면 9월에 한·미 FTA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FTA 협정문에는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Read More](#)

3. 중소·중견기업·영세 협력사 FTA 활용 돕는다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1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6곳과 FTA 지원기관 8곳, 업종별 협·단체 12곳 등에서 약 30명이 참석해 FTA 이행·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18년 상반기 FTA 활용 기업 간담회 결과, ▲해외 조달시장 수출 지원 확대방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방안,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사례 및 대응방안이 올랐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TREND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미생물 규격이 적용되는 빵류의 크림 정의 신설 및 미생물 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오기 정정 등이 있다. 또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등재하였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 고시 하였다.

[Read More](#)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 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 개정 예고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영·유아 대상 식품에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기준·규격 신설 하고, “기타 영·유아식”과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유형을 통합이 있다. 또한 고령화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 식품원료 목록정비,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했다.

[Read More](#)

3. 축산물 수입허용국가,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주요 개정사항은 유가공품의 정의 수정 및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수정, 신규 수입 허용 된 오스트리아산 우유류, 가공유류, 유크림류와 체코산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목록에 반영 등이 있다. 신규 수입 축산물의 유형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고, 수출위생증명서 필수조항 일부를 현실화 하기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 예고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ERTIFICATION TREND

1.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표시방법 변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표시방법이 변경된다. 기존의 '시험분야 식별부호',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가 삭제되고 동일기자재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면서 해당 기기에 대한 기호가 추가 되었다. 해당 변경은 2018.07.31 부터 적용된다.

◆ 변경사항

- 1) 시험분야 식별부호 (R, E, M),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M, I, S) 삭제
- 2) 동일기자재 부호 추가 (S)

◆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S	-	A	B	C	-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 ①란 :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 기재
- ②란 :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 기재
- ③란 :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 기재
- ④란 :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 기재
- ⑤란 :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 기재

◆ 적용 예시

인증 종류	기존	변경
동일기자재 적합인증	R-CRM-ABC-ABC0001	R-CS-ABC-ABC0001
동일기자재 적합등록	R-REM-ABC-ABC0001	R-RS-ABC-ABC0001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